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본교의 CCTV 설치 목적은 학생들의 교내 생활지도를 돕고, 학교폭력 및 도난, 기타재난위험요소의 발생을 사전에 감지, 예방하기 위함이다.

제2조(CCTV 운영위원회) ①CCTV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기타보안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CCTV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기획관리처장(위원장), 교학처장, 원각도서관장, 기숙사총사감, 경영지원팀장, 시설관리팀장, 학생팀장으로 구성한다.

③전문기술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
2. 통합관리되는 CCTV의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시 자격 심의
3. 정기적인 보안점검 및 내부감사 실시
4. 화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 이용·제공시 심의
5. 그 밖에 CCTV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⑥위원회 의결사항은 총장의 재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CCTV의 관리 및 운영) ①CCTV의 관리 및 운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CCTV의 운영 및 관리, 그리고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 전반에 걸친 총괄 관리 책임자는 기획관리처장으로 한다.
2. CCTV의 유지보수 및 관리는 경영지원팀에서 수행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책임자는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② 본교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대수 및 촬영범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 장소는 다음과 같다.(참고1호)

1. 본교에서 실제 촬영이 실시되는 CCTV는 총 25대이며, 촬영범위는 본교 전

체구역이다.

설치 위치	본관				도서관					기숙사			관사	계
	1층	2층	3층	5층	B1층	1층	2층	3층	5층	B1층	1층	외각	외각	
설치 대수	1	3	4	1	1	1	2	1	1	4	2	1	3	25

2. 본교 CCTV는 보안 및 시설관리를 고려해 총 25개 운영한다.
 3. 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장소는 본교 본관 경비실이며,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약 30일이다.
 4. 화상정보에 대한 실시간 감시는 본교 정문 경비실에서 외주경비업체 직원에 의하여 24시간 감시한다.
 5. 화상정보의 녹화, 재생 및 삭제는 경비실내 위치한 CCTV VTR을 통해 구현되며, 화상정보가 재생, 녹화되는 경비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책임자 및 허가인원 외 출입을 통제한다.
- ③ 본교 정문에 CCTV 촬영시간 및 촬영구역을 공지한 안내판을 게시하며, 안내판의 규격 및 모양은 보행자가 알아보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 예시와 같다.

CCTV 설치 안내	
목 적	학생안전, 시설관리, 화재예방, 도난예방 등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녹화
촬영범위	본교 건물 내·외부, 주차장
책 임 자	기획관리처장, (041) 731-3060
관리업체	ADT캡스 논산영업소 소장, (041) 736-7751

제4조(CCTV의 설치)보안목표시설 외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총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대표와 협의.
2.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대한 내용절차 및 방법)① 정보주체는 화상 녹화된 정보에 대한 존재확인, 열람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화상정보 열람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경영지원팀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정보주체 열람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를 열람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②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삭제, 열람 등의 요구 거부 시 정보주체는 7일 이내에 본교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삭제, 열람 등의 요구 거부 시 총장은 정보주체에게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3자에 의한 화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을 위한 절차 및 방법)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3자의 화상정보 열람 시에는 총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총장 및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다.

③ 제3자의 화상정보 열람 요구를 총장이 거부할 시 총장은 그 사유를 제3자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①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않된다.

②보안경비 위탁업체 파견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않되며, 이를 위반할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위탁업체에서 진다.

③보안경비 위탁업체 신규 파견근무자는 보안서약서(별지2호 서식)를 작성하여 경영지원팀 위탁업체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8조(적용배제) 본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본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지 않는다.

CCTV 설치 현황

※ 본관 및 기숙사					
구분	모니터 채널	설치 위치	감시구간	카메라 종류	비고
본관	01(구)	본관현관1층	본관현관 출입문	고정식 (일반)	
	02(구)	본관2층 야외휴게실	기숙사 옆 2차선도로	팬/틸트/줌(적외선)	
	04(구)	본관 2층 야외휴게실	본관 앞 주차장 및 도로	팬/틸트/줌(적외선)	
	10(구)	지관전 법당	지관전 법당	고정식 (일반)	
	11(구)	본관 2층 야외휴게실출입구 앞	국제교류센터 앞 복도	고정식 (일반)	
	13(구)	PC실습실-1 뒷쪽	PC실습실-1	고정식 (일반)	미사용
	14(구)	PC실습실-2 뒷쪽	PC실습실-2	고정식 (일반)	미사용
	15(구)	국제회의실	국제회의실	고정식 (일반)	미사용
	16(구)	동시통역실	동시통역실	고정식 (일반)	미사용
기숙사	03(신)	기숙사 B1 중앙홀	기숙사 B1 중앙홀	고정식 (일반)	
	05(신)	여자기숙사 B1계단 앞쪽	여자기숙사 B1 계단	고정식 (일반)	
	06(신)	여자기숙사 1층 현관	여자기숙사 출입문	고정식 (일반)	
	07(신)	남자기숙사 1층 현관	남자기숙사 출입문	고정식 (일반)	
	09(신)	여자기숙사 세탁실	여자기숙사 세탁실	고정식 (일반)	
	12(신)	남자기숙사B1 E/V 앞쪽	남자기숙사B1 E/V 출입문	팬/틸트/줌(적외선)	
	08(구)	기숙사 옆 후문	관사 내려가는길	팬/틸트/줌(적외선)	
※ 관사					
채널	설치 위치	감시 구간	카메라 종류	비고	
01	관사 현관출입문 우측	관사 현관 출입문	팬/틸트/줌(적외선)		
02	관사 현관출입문 좌측	관사 정원 및 대문	팬/틸트/줌(적외선)		
03	관사 뒤쪽 좌측	관사 뒷창문	팬/틸트/줌(적외선)		
※ 도서관					
채널	설치 위치	감시 구간	카메라 종류	비고	
01	도서관 B1 복도	도서관 B1출입구	고정식 (일반)		
02	도서관 현관중앙	도서관 현관 출입구	고정식 (일반)		
03	도서관 2층 계서관 윗쪽	도서관 2층 정기간행물실 출입구	고정식 (일반)		
04	도서관 2층 외곽	도서관 외곽지역	팬/틸트/줌(적외선)		
05	도서관 3층 중앙	도서관3층 단행본자료실 출입구	고정식 (일반)		
06	도서관 5층 엘리베이터 앞쪽	도서관 5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고정식 (일반)		

본관 9개[5개사용 (실내3, 외곽2)] . 도서관 6개(실내5, 외곽1), 기숙사 7개. 관사 3개(외곽3) 실내용 고정식 일반카메라 17개, 옥외용 팬/틸트/줌 적외선카메라 8개.	합계 25대 사용 21대
---	------------------

[별지1호]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열람 신청 내용	
CCTV설치장소	
열람희망 시간대	
열람목적	

200

신청인 : (서명)

금강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2호]

보안 서약서

본인은 _____년__월__일부로 보안, 경비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금강대학교 보안, 경비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
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
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ADT캡스
 직 위 : 사원
 성 명 : (서명)

금강대학교 기획관리처장 (인)